

추석 대비 선원 임금 체불 예방 추진

- 임금 상승 체불 발생 및 체불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24년 8월 5일(월)부터 9월 4일(수)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.

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하며, 임금 상승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도록 지도·감독할 계획이다. 지난 설 날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확인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6억 원을 해소하였다.

한편 사업체가 도산·파산한 경우 선원은 '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'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,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'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'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
* (문의)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(051-996-3647)
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)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승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	책임자	과 장	이민석 (044-200-5740)
	선원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행숙 (044-200-5743)

참고

24년 추석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대책

□ 추진 개요

- (목적) 명절 전 특별근로감독으로 선원 임금체불 예방, 기존 체불 임금 적극 해소 등 선원 생계안정 지원 및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
- (기간) '24.8.5.(월) ~ '24.9.4.(수)(4주 간)
- (점검반) 11개 지방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편성·운영
- (중점 점검)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 등

□ 주요 내용

- 취약업체의 임금체불 예방 활동 강화
 - 임금체불 우려 업체의 임금지급 여부 수시 파악
 - 체불임금 발생사실 인지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대책 강구
 - 생산수당 지급 사업장의 고정급 지급 이행 실태 파악 철저
- 기존 임금체불 업체의 체불임금 청산
 -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임금 청산 유도
 - 소유선박의 경매 처분 시 선원임금을 우선변제 이행토록 촉구
 - 부도업체(기업회생절차 포함)는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을 별도 지정 관리
 - 임금 지급 시까지 사업장 방문 등 취약업체 동향파악 정례화
 -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(대한법률구조공단), 지역 내 선원노동조합과 협조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 적극 지원(임금체불 확인원 발급 등)
 - 외국인선원 임금 상승 체불업체에 대하여도 집중 관리
-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입건 송치 등 강력 대응

□ “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”이란?

-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선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**해양수산부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)**가 **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사업비를 지원**
- **대한법률구조공단**은 선원법 상의 임금, 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에게 **무료로 민사소송 등 각종 법률적 지원**

□ 지원대상

- 「선원법」 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**선원**
* 선원법 상 선원: 상선 5톤이상, 어선 20톤이상의 선박에 승무한 사람(선원법 제3조)
- 「선원법」 상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**선원**
-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**선원가족**

□ 신청방법

- **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**를 통해 사전 사건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
- **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**
→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
(반드시 상담을 통한 사전심사 필요)
→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작성 및 소송 위임

□ 제출서류

- (임금·퇴직금 체불 시) 해양수산부(지방해양수산청)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금품확인원, 신분증, 인장 등
- (재해보상 사고 관련 시) 진단서 등 재해보상 소명 서류, 선원수첩, 선원신분증명서,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임금대장, 신분증, 인장 등

※ 문의: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콜센터 ☎ 국번없이 132
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률지원 담당 ☎ 051-996-3647